아름다운 생복한 사 입

제2021-69호 2021년 4월 13일(화)





보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공 고

여수	시 경	용고	제2021-1057호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
이 여수	시 경	공고	제2021-1071호	「여수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8
ㅇ 여수	시 공	공고	제2021-1072호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5
이 여수	시 경	공고	제2021-1075호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
ㅇ 여수	시 공	공고	제2021-1077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49
여수	시 공	길 고	제2021-1080호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54
0 여수	시 글	문고	제2021-1089호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	59

기 타

회				
람				

여수시 공고 제2021-1057호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여수시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 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운영지원 (안 제3조)
 -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야간운항·신규운항 등을 할 경우 비용의 일부 를 지원사업자에게 지원
-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안 제4조)
 -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 여객선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
 「해운법」제15조에 따른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중 2년 연속 적자 운항 항로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항결손액 중 미지원된 금액 지원
- 운항결손액 (안 제5조)
 -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 지급시기 규정
- 지원중단 (안 제6조)
 - 지원금 지원을 중단 사유 규정

○ 업무협약 (안 제9조)

- 지원사업자의 여객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협약 체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4층 섬자원개발과(국동, 여수시청 국 동임시별관)

- 전자우편 : ask3830@korea.kr

- 팩 스: (061) 659-39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섬자원개발과 (전화 061-659-3998)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조네인 성득별 대통	찬성	반대	의선(기TT)	참고사항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여수시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여수시(이하"시"이라 한다)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2."여객선사"란「해운법」제3조 및 제4조에 뜨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 3."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4."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5."신규운항"이란 여객선을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6."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중 2년 연속 적자운항 항로이거나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
- 7. "지원사업자"란 증회운항, 야간운항,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등으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 선사를 말한다.
- 8. "운항결손액"이란 지업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지원)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야간운항·신규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운법」 제 15조에 따른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중 2년 연속 적자 운항 항로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항결손액 중 미지워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항결손액) ①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을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 2. 유류비
 - 3. 그 밖의 운항경비
 -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금은 검증 후 사후정산제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 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지원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게 승선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협약) 시장은 지원사업자의 여객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여수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 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자체 추진 의무조항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1.12.4.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시 지역 특성과 시민의 다양한 건강요구를 반영한 신체활동 장려사업을 주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신체활동장려 시책사업 참여자 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
 - 일정 목표 달성 시 회당 최대 4만원까지 지역화폐, 물품 등 형태로 지
 - 비만관리사업 참여자가 체지방률 감량 일정 목표 달성 시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현금 지원

다. 신체활동 장려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안 제9조)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사업장
- 학생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학교
- 라. 신체활동사업 기여자에 대한 표창 등 기준 마련 (안 제11조)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예고기간 : 2021. 4. 13. ~ 2021. 5. 3. (20일간)
-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61-659-424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4 여수시 시청서 4길 47(학동) 건강증진과
 - 전 화: 061) 659-4245 FAX: 061) 659-5840
 - 이메일 : laim99@korea.kr
- O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신체활동장려사업	유영	조례
-------	-------	----------	----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찬성여부		0124(710)	-)rl 구나그 기술L	
내용	찬성	반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여수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여수시민의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 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건강결정요인(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물리적.사회적 환경요인과 생활습관 및 보건의료체계 등의요인을 말한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원활한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하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 · 연구사업
 - 3. 건강행태 개선과 신체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
 - 4. 비만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비만관리사업
 - 5. 사업 홍보와 확산을 위한 각종 경연·제안·공모·캠페인
 - 6. 주민 참여 읍면동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 7.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
-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따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 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이하 "참여자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참여자 지원은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최대 4만원까지 지역화폐·바우처 또는 물품(이하 "성공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참여자 지원 성공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참여한 신체활동사업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다만, 성공품 지급 규모가 해당 사업연도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공품 지급인원을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2. 그 밖에 시장이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비만자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지방률 감량 등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 ①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시장에게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성공품 지급 신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품을 수령해야 한다.
 - ② 성공품 지급대상자가 시장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사업의 지급 기준을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성공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성공품을 수령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공품의 사용을 즉시제한한다.

제9조(신체활동 장려 사업장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 2.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 3. 학생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학교 (보건소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에 해당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등)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확산.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대상 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 1. 신체활동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
 - 2. 신체활동장려사업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
 - 3. 각종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경연·제안 공모에 따른 우수 참여자
 - 4. 신체활동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사업장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공고 제 2021-1072 호

공 고

「여수시 시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업원분

매월

○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구분	납기	납세자 (5개)	세율체계
		개인	1만원
균등분	8월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m ² 당 250원

사업자

행

혅

	7	개 정 <u></u>	
구분	나기	납세자	세육체계

구분	납기	납세자 (3개)	세율체계
개인분	8월	개인	<좌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①기본세율 (5~20만원) ②연면적세액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좌동>

2. 주요내용

- 절의 제목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변경함(안 제3장제1절)
- 개인분의 세율을 규정함(안 제6조)
-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함(안 제3장제2절, 안 제7조, 안 제8조))
- 3. 입법 예고기간 : 2021.4. 13. ~ 5. 3.(20일간)
- 4. 「여수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O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 번호
-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O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O E-Mail: junho9574@korea.kr
- O 전 화: 061-659-3527
- O F A X: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소대한 왕국을 대중	찬성	반대	의전(개冊)	71日 语工作的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햀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 율: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 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 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제7조(세율) -----사 업소분-----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수시 공고 제 2021-1075 호

공 고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됨 에 따라 시세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 및 별지서식을 현행화 함

구분	납기	납세자 (5개)	세율체계
		개인	1만원
균등분	8월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m ² 당 250원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액

혀 행

7	H	정	

구분	납기	납세자 (3개)	세율체계
개인분	8월	개인	<좌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①기본세율 (5~20만원) ②연면적세액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좌동>

○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및 서식 현행화

2. 주요내용

- 세세목 명칭변경 : 「지방세법」개정
 - 절의 제목을 "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변경함(안 제3장제1절, 제5조)
 -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함(안 제3장제2절)
 -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O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

-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제51조"를 "같은 법제50조"로 변경(안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 "법 제83조 제4항"을 "법 제83조 제6항"으로 변경(안 제7조)

○ 상위법과 다른 용어 및 서식 등 현행화

- "종합소득세분"을 "종합소득"으로, "양도소득세분"을 "양도소득"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제12조)
- 별지 서식을 정비함
- 담당 → 팀장(모든 별지 서식 결재란)
- 「지방세법」제103조의제1항 → 「지방세법」제128조의제1항
 ([별지서식 제24호 서식])
 - 10%공제 → 공제금액([별지 제26호 서식])
- 3. 입법 예고기간 : 2021.4. 13. ~ 5. 3.(20일간)
- 4.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O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 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O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O E-Mail: junho9574@korea.kr

○ 전 화: 061-659-3527

O F A X: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소대한 왕국을 대중	찬성	반대	의전(개冊)	기다 검포까히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 중 "주민세(균등분)"을 "주민세(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 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하고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 중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하고, "법 제83조 제4항"을"법 제83조 제6항"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종합소득분)"을 "(종합소득)"으로, "(양도소득분)"을 "(양도소득분)"으로 한다.

제12조 중 "(종합소득분)"을 "(종합소득)"으로, "(양도소득분)"을 "(양도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제6호, 제9호, 제12호~제15호, 제21호~제24호, 제29호 서식을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2호 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
-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5호 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12호 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15호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20호 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 [별지 제21호 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 [별지 제22호 서식]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 [별지 제23호 서식]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 [별지 제24호 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 [별지 제26호 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 [별지 제29호 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접수	신고일자	성명·법인		주 소	담배의 구분	수 량	세 율	세액	납부일	2	결 ㅈ	H
번호	[선고철자	명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배의 T군 	T 6	에 팔	세력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글시 제 2호													
				담배소비	세 고	·세자	료 처리	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	۲)									(여수시)
과세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 1	결 7	대
번호	(합인정)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함배의 下군 	Тб	세뀰	산물세력	가산세	711	걸의걸	담당자	팀 장	과 장
				_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

○○연도 ○○월분 (여수시)

							`	' ' '/
일련	성 명		주 소	비과세·감면			결 자	
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 유	세 액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10mm \times 297mm(일반용지 $80g/m^2$)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여수시)

접수			납 세 의 무 지	ŀ	사업소	기본시	ll율	합계		2	결 재	
일자	사업소명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연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여수시)

접수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물건의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_	고 및 경정	•결정 내	용	-	결 자	1
번호	주	소	과세물건	소재지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팀 장	과 장
		1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여수시)

과세			납 세 의 두	구 자	사업소							:	결 자	H
번호	사업소명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여수시)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길	를 7	대
BICT	근ㅗ근서	00(HC0)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1112	110 - 111	6124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여수시)

	나세번호 나보그브 서면(버이면) 저하번호 긔:										(-11 1/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일련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고		
			ı								
		1			1		1	1	1		
			·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	가산세:	합 :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	수의무기	다 주:	<u></u>											7	기관명	(사업장당	명)						
			근로	소득			0 2	자소득		:	기타(비	배당)소득	<u> </u>			보	통징수	분			글	별	대
월별	납부 일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 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 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여수시)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개인시앙오국제(<mark>앙도오국)</mark> 파제자묘 저디구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여수시)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팀 장	과 장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5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일까지) (여수시) 주 결 재 소 접수 관 할 과세 법인명 법인세 세율 본세 가산세 계 법 인 일자 세무서 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팀 장 과 장 등록번호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 년도 ○○ 월분 (여수시)

	<i></i>																	`	1 1 1 1/
	토지	성명(법인명)	상 ㅎ					비과세		,	사	후 관	리	내 용	2		결	. 7	H
접수	면적	00(HC0)	0 +	납세자	과 서	1		17		확인내용	4차	확인내용	7차	확인내용	10차	확인내용			
번호	건물	주민(법인)	전화	주 소	丑 3	<u>-</u>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2차	확인내용	5차	확인내용	8차	확인내용	11차	확인내용	담당자	팀 장	과 장
	면적	등록번호	번호				합	합 계 (확인내용	6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12차	확인내용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1호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담당자	팀 장	과 장

(단위: 원, m²)

	납세: (신청인	의무자 민) 내역			재산세투	^부 과내역					물납 신청내역	격				물납 허가내	물납 허가내역		
신 청 연월일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목	과세	`무거귀	과세표준	티고[제어	당초 납부	신청세액	종류 소재지		면적		물납부동산	통지일	부동산등기	등기일		
	66	주소지	과세 대상	번호	골 신 시 -	-다시[표군	구각제픽	세액	18M4	σπ	<u> </u>	토지	건물	평가가액	중시글	서류제출일	(물납일)		

※ 작성요령: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2호서식]

담당자	팀 장	과 장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원)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선	<u></u> 산세 부과내역			-	분납 신청내	역
신 청 연월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세목	과세대상	과세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납기내 세액	분납세액	분납기한
	00	주소지	~ ¬	기세네 6	기세신호	교민시	기세끄러	十れが「			. 다기건

※ 작성요령: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3호서식]

담당자	팀 장	과 장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여수시)

дШ	무거스제기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	신고	1사항	직권지정 사항	
연번	물건소재지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신고사유	통지일	처리자		

297mm×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기도원 비/스	9) of 1		ш;		4174	ſ			
	자동차세(소	市) 연 ^	11 学 文	一世	살답구	신고시	1			
	① 성명(대표자)			② 주단	민(법인)등록	f번호				
신고인	③ 상호(법인명)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납세자)	⑤ 주 소 (소 재 지)					,				
	⑥ 전 화 번 호(휴대전화:)	① 전	전 자 우 편 주 소					
		신 그	고 내	용						
	□ 연 &	베액 신고		분할님	납부 신고					
⑧자동차번호	⑨차량제원- 승용차(배기량)- 승합차(정원)- 화물차(적재정량)	(1	⑩ 연세액		⑪ 제 1 분할납!		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어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스	소유에 대한 자동차			
세의 분할납부 5	또는 연세액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	또는 인)			
				대리인		(서명 .	또는 인)			
여수시장	당 귀하									
		9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	인은 위임받는 자에거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9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지	하(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성	명 주면	민등록번호			위임자외	h의 관계				
받는 자 주	-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	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	<u>-</u>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	· 단서에 따라 신고한 신고	1시이 저스즈이니다	접수자	접수일						
'사랑세립] <u>세120</u> 호세18 원	전시에 따다 선표한 선표	<u>-</u> 시키 립구등립되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작성요 령

- □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 명을 기재합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 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 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차량제원: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자는 적재적량)을 기 재합니다.
- ⑩ ~ ⑫: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위임장: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전화: 061-65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여수시)

접수			주	소			공제				결 ㅈ	Н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자동차번호	연세액	금액	납부세액	납부일	담당자	팀 장	과 장
					-							
					_							
					_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여수시)

과세번호 .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	관 할	세율	본세	가산세	계	킬	결 ㅈ	H
- 파제민오	(O 10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환경세액 세무서		시 뀰	근세	가산세	711	담당자	팀 장	과 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신ㆍ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혅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 제5조(비과세 관리) ------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 -----주민세(개인분)비과세 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 처리부-----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제2절 <u>사업소분</u> 제2절 재산분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주민세 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 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분-----"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 ------주민세(사업소 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 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제49조-----같은 법 제50조-----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 제7조(보통징수)-----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 | -----주민세(사업 (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

하고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② 법정 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 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 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 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 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 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 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 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 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과세자료

83조 제6항
<u>「지방세기본법」제49조</u> <u>같은 법 제50</u>
<u> </u>
세10조(신고 옷 합구시다) ①
<u>(종합소득)</u>
<u>(양도소득)</u>
 .
제12조(보통징수)
(종합소득)
(양도소득)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 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 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 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여수시 공고 제 2021-1077 호

공 고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됨에 따라 시세 징수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현	행		

구분	납기	납세자 (5개)	세율체계
		개인	1만원
균등분	8월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m [*] 당 250원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액 × 0.5%

개 정

구분	납기	납세자 (3개)	세율체계
개인분	8월	개인	<좌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①기본세율 (5~20만원) ②연면적세액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좌동>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지방세법」개정
 - "재산분"을 "시업소분"으로 변경(안 제2조)
- 3. 입법 예고기간 : 2021.4. 13. ~ 5. 3.(20일간)
- 4.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O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 번호
-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O E-Mail: junho9574@korea.kr
- 전 화: 061-659-3527
- O F A X: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소대한 왕국을 대중	찬성	반대	의전(개冊)	기다 검포까히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	납부자)
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	
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	사업
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	소분
민세 <u>재산분</u> 에 한정한다)를 계속	
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	
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	
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여수시 공고 제 2021 - 1080 호

공 고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됨 에 따라 시세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현	행	

구분	납기	납세자 (5개)	세율체계
		개인	1만원
균등분	8월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m [*] 당 250원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액 × 0.5%

개 정

구분	납기	납세자 (3개)	세율체계
개인분	8월	개인	<좌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①기본세율 (5~20만원) ②연면적세액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좌동>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지방세법」개정

-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안 제2조)

- 3. 입법 예고기간 : 2021.4. 13. ~ 5. 3.(20일간)
- 4.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O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 번호
-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O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O E-Mail: junho9574@korea.kr
- 전 화: 061-659-3527
- O F A X: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소대한 왕국을 대중	찬성	반대	의전(개冊)	기다 검포까히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정의)
2
, <u>개인</u>
<u> </u>

공 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의 규정 에 의거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3.

여 수 시 장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1. 공고기간 : 2021. 4. 14. ~ 4. 29.(15일간)

2.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내역

- 심 의 일 : 2021. 4. 12.(월)

- 심의안건 : 자발적 지정기탁물품 접수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 심의내역 : 1건

연번	심의 번호	참여 위원	기부금품 현황	심의결과	주관 부서
1	2021-2	10명	 ○ 기 탁 자 : ㈜식스기획(대표자 김환식) ○ 기탁물품 : 안마의자 2개(환산가액 6,000,000원) ○ 기탁목적 : 이동노동자의 휴게 편의성 도모 ○ 사용용도 : 아동노동자 쉼터 아용자의 휴식 여건 증진 	원안가결	산업 지원과

- 회의록 : "붙임" 참조

3. 문의사항 : 여수시 징수과 (☎061-659-3580)

회 의 록

1. 위원회명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
2. 개최일시	2021. 4. 12.(월)[서면심의]
3. 개최장소	서면심의
4. 참석인원	위원장 여수시장 권오봉 등 10명
5. 심의안건	(제2021-2호) 자발적 지정기탁물품 접수(안) - 안마의자 2개(환산가액 6,000,000원)
6. 주요내용	 ○ 심의일자 : 2021. 4. 12.(월)[서면심의] - 결과보고 : 2021. 4. 13.(화) ○ 주요심의내용 -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물품 여부 - 기탁의 자발성 여부 및 다양한 시각을 통한 기탁배경 - 기탁물품의 행정목적 기여정도 및 사회적 물의 야기성
7. 심의결과	○ 원안가결(접수결정)- 출석위원(10명) 전원 접수 승인